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6

발의연월일: 2020. 6. 26.

발 의 자:김경협·이개호·이용호

오영환 · 전용기 · 이동주

황운하 • 고영인 • 김정호

정성호 · 용혜인 · 이원택

이용빈 · 이해식 · 양정숙

이학영 의원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지단체에서는 관계 법규를 정비를 통해 공공기관 이사회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하여 이해관계자 참여형 의사결정구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내부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해외에서도 노사공동결정제,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가 여전히 '정부 독점형' 구조로 제한되어 있음.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인 이상씩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25조제5항"을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 ④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인 이상씩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 4항 및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비상임이 사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중에
	는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
	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 1인 이상씩 포함되어야 한
	<u>다.</u>
<u>④</u> · <u>⑤</u> (생 략)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인 이상씩 포함
	되어야 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⑤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보장	<u></u>
에 관하여는 <u>제25조제5항</u> 을 준	<u>제25조제6항</u>
용한다. 이 경우 "공기업의 장"	

은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본	
다.			